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중 지방도 000호선 개량공사 설계 반영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내 용

충청남도(○○○○사업소)에서는 2005. 12. 31. ○○○○국토관리청이 시행하여 완료한 ‘○○~○○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¹⁾ 성과품을 인수하여 2010. 2. 10. 서울특별시 ○○구 ○동 000-0에 있는 ○○건설(주) (대표이사 ○○○)와 2개사²⁾와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라 한다.) 00호선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75,378,352,000원³⁾으로 도급계약하고 2010. 3. 3. 착공하여 2020. 3. 5. 준공예정으로 시행중⁴⁾에 있다.

「도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국토관리청에서는 2003. 5. 20. 경기도 ○○시 ○○구 ○○동 0000에 있는 (주)○○엔지니어링 (대표자 ○○○) 외 1개사와 ‘○○~○○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총 용역부기금액 2,923,000,000원에 용역계약하고 같은 날 착수하여 2005. 12. 31. 완료

2) 대전광역시 ○구 ○○로 0(○○동)에 있는 ○○종합건설(주) (대표자 ○○○), 대전광역시 ○구 ○○대로 000번길 00 ○○건설(주) (대표자 ○○○)

3) 2017. 2. 20. 총 공사부기금액 80,480,290,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

4) 충청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비의 90%을 지원받아 공사 시행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사업소)에서는 2009. 11월 국지도00호선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 지방도000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발주 설계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조사·설계에 따라 국지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그림]과 같이 지방도000호선인 ‘충청남도 아산시 ○○○면 ○○○리 지내 1.27km 구간의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포함, 설계에 반영⁵⁾하여 시행 할 예정으로 있어 총사업비 1,717,325,000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⁶⁾가 있다.

[그림]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 반영된 지방도000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 현황

설계도면	도면 생략
------	-------

※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 5) 충청남도(○○○○파)에서는 '09. 1월에 충청남도 ○○시 ○○○면 ○○○리 지내 지방도000호선에서 사망 1명, 부상 35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로 인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위험도로 선형개량 건의가 있어 동 구간을 포함하였다고 진술
- 6) 충청남도(○○○○파)에서는 2014. 2. 25. 충청남도 ○○시 ○○○면 ○○○리 지내 1.27km를 포함한 ‘지방도000호선(○○～○○ 제2공구) 공사’를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사업소 ○○지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충청남도(○○○○사업소 ○○지소)에서는 2015. 1. 2. 충청남도 ○○시 ○○○로 00에 있는 ○○건설산업(주) (대표자 ○○○)와 ‘○○～○○ 지000호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총공사부기금액 1,446,689,000원에 도급계약하여 2018. 4. 2.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건설산업(주)의 부도로 2015. 3. 27. ○○종합건설(주)가 주계약자로 선정)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시정] 국지도00호선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구간 중 지방도 1.27 km 구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총사업비에서 1,717,325,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